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의 금지〉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00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주민 대표성에 관한 허위 표시 금지 등	3
2. 집회·시위에서 사용하는 현수막 등 홍보물에 주최자의 성명 등 기재 ...	9
3.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집회·시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13
※ [참고] 옥외집회 신고서 양식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4. 9.
3. 회부연월일 : 2026.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집회·시위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이나 주민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방하거나, 금품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공공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서에 허위 기재가 이루어지거나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누락·허위 표시되는 경우, 집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허위표시와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과 제재 근거가 부족하여, 주민대표성 사칭이나 허위자료 유포로 인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기망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있음.

이에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 및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항제4호마목, 제7조제2항, 제16조제4항제4호·제5호 및 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주민 대표성에 관한 허위 표시 금지 등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그 대표기구인 것처럼 명칭, 성격 또는 구성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4호).

개정안은 주민의 대표성과 관련된 허위사실의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시 주최자 및 주최단체가 특정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구임을 표방하는 경우 주최자 및 구성원의 해당 지역 거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1항제4호가목·마목), 관할 경찰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기재된 지역 대표성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허위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최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제2항),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 ----- ----- ----- -----

현행	개정안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u>가. 주소</u> 나. ~ 라. (생략) <u><신설></u> 5.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생략) <u><신설></u>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가. 주소(단체인 경우 단체의 소재지)</u> 나. ~ 라. (현행과 같음) <u>마. 주최자 및 주최단체가 특정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구임을 표방하는 경우 주최자 및 구성원의 해당 지역 거주 여부</u>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제1항제4호마목에 대한 기재사항이 명</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u>아니한</u> 때	<u>백히 허위하고 의심되는 경우 주최자에게 그 근거를 소명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 ③ -----통고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자료 요청은 <u>보완할 사항과 소명할 자료를</u>-----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u>아니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u>---

현행	개정안
3. (생략) ② ~ ⑥ (생략)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생략)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⑤ (생략) <u><신설></u>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그 대표</u> <u>기구인 것처럼 명칭, 성격 또는</u> <u>구성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u> 5.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생략)

가. 안 제6조제1항제4호 가목 : 신고서에 단체 소재지 기재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가목은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¹⁾

1) 현행 옥외집회 신고서 양식 신고인 부분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또는 직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옥외 집회 신고서 제출의 실무 운영에서 단체가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성명 칸에 단체의 명칭을 기재하고, 주소 칸에 단체의 주소를 기재하고 있음.

개정안 제6조제1항제4호 가목에 괄호로 (단체인 경우 단체의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은 현재 실무의 운영 방식과 동일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나. 안 제6조제1항제4호 마목 등 : 신고서에 지역 거주 여부 기재

누구든지 집회·시위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문제를 가까이에서 자주 바라볼 수 있고 해당 문제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은 중시되는 경우가 많음.

이를 활용하여 집회·시위에서 주장하는 의견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님에도 해당 지역 주민인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은 주최자가 특정지역의 주민임을 표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 거주 여부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시위에서 지역 주민 대표성과 관련된 허위의 발언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발언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제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 주민 대표성과 관련된 소명자료 미제출을 집회·시위 금지 통고의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주민의 대표성 등을 명백히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으로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²⁾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특정 지역의 주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허위로 표방하는 것이 명백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음.

참고로, 경찰청은 주민이라고 신고한 경우, 다른 집회 주최자와 달리 거주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 부담을 지게 되고, 미소명 시 집회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차별적인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명칭을 다르게 기재할 경우, 규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명백히 허위라고 의심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구성원', '주민 대표기구'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임.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2. 집회·시위의 현수막 등 홍보물에 주최자 성명 등 기재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집회나 시위에 사용하는 현수막, 전단 등 홍보물에 주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을 말한다) 및 연락처 등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생략)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⑤ (생략) <u><신설></u>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3. (현행과 같음) 4. (생략) 5.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나 시위에 사용하는 현수막, 전단 등 홍보물에 주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을 말한다) 및 연락처 등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u>
제26조(과태료) ① <u>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u>	제26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

현행	개정안
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② (생략)	1.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집회·시위에 사용하는 현수막 및 홍보물에 주최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홍보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허위자료 유포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며, 공공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

다만, 헌법은 언론, 출판의 자유³⁾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며,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및 대화방 등에서 실명확인을 하도록 한 (구)

3)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2021년 위헌 결정⁴⁾을 선고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현행 법률상 허위자료의 유포에 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⁵⁾에 따른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제2항⁶⁾에 따른 허위 통신 및 「형법」 제307조제2항⁷⁾에 따른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허위의 현수막 및 허위의 홍보물을 만드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수막과 오프라인 홍보물에 작성자의 성명을 기재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8일 선고 2018헌마456 결정 등

5)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경찰청은 현수막 등 홍보물에 연락처와 같은 개인 식별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및 익명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3.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집회·시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5호).

개정안을 통해 제16조제4항제5호가 신설되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현행	개정안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생략)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⑤ (생략) <u><신설></u>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3. (현행과 같음) 4. (생략) 5. <u>집회 또는 시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u> ⑤ (현행과 같음) ⑥ (생략)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투명성 및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로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있음.⁹⁾ 동 규정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자 등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선거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결집하여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으로서 선거 결과는 향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인 반면, 집회·시위는 정치 과정에 있어서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집회·시위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용할지에 대해 시민들이 스스로 숙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와 집회·시위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서는 금품·향응 등의 제공 금지 의무를 예외 없이

9)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회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 7. (생략)

② ~ ⑧ (생략)

모든 사람에게 지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 등 행사 필수인원 또는 일반 참가자들에게 사회통념상 필요 최소한의 음식물 또는 행사 소요물품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금품 제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없어 교통비 지원 등 통상적인 행위도 처벌 대상인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집회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이처럼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부과할 경우 명확성 원칙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참고

옥외집회 신고서 양식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또는 직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집회 (시위· 행진) 개요	집회(시위·행진) 명칭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개최장소			
	개최목적			
관련자 정보	주최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전화번호 :)		
	주관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전화번호 :)		
	주최단체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전화번호 :)		
	연락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전화번호 :)				
질서유지인	명			
참가 예정 단체· 인원	참가예정 단체			
	참가예정 인원			